

###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(안)

발의년월일 : 2000. 2. 29.

발 의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266 |
|----------|-----|

#### □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('99. 8. 31 개정)과 동법시행령('99. 12. 31 개정) 및 공무원여비규정(2000. 1. 8 개정)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과 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# □ 주요골자

- 의정활동비(개정조례안 제2조)
  -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: 월 60만원 → 월 70만원
  - 보조활동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: 월 10만원 → 월 20만원
- 회의수당 1일 6만원 → 회기수당 1일 8만원(개정조례안 제3조)
- 국외여비지급기준표상의 일비, 숙박비, 식비의 등급제(가~라)폐지등
  - 일 비 : 의장·부의장 30 → 40불, 의원 25 → 35불
  - 숙박비 : 의장·부의장 169 → 186불, 의원 137 → 151불
- 자구수정
  - 제1조(목적) :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원 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→ 충청북도의회의원 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.)
  - 일비, 숙박료 → 현지교통비, 숙박비(개정조례안 제4조, 제9조 국내여비지급기준표)

- 조문배열정리 : 종전 10개조, 부칙, 별표 3 → 7개조, 부칙, 별표 3
  - 종전 제2조(의정활동비지급)+제6조(의정활동비) → 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
  - 종전 제3조(회의수당지급)+제7조제1항(회의수당지급기준) → 제3조(회기수당)
  - 종전 제7조제2항 제3항(원격지회의출석비) → 제4조(원격지회의 출석비)
  - 종전 제5조(여비의 종류) : 여비지급기준표로 가능함으로 삭제
  - 종전 제4조(여비지급)+제8조(여비지급기준) → 제5조(여비지급기준)

#### □ 첨 부

1.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(안) 1부
2. 관련법규 발췌 1부
3.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관련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##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원(이하“의원”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,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 의원의 의정자료수집, 연구비는 월 700,000원으로 하고 그 보조활동비는 월 200,000원으로 하며, 매월 충청북도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3조(회기수당) ①의원의 회기수당은 1일 80,000원으로 한다.

②의원의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, 회기중 회의(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)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

제4조(원격지회의출석비지급) ①회의당일 출·퇴근이 곤란한 원격지(도의회 소재지로부터 편도 60킬로미터 이상)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지급한다.

②제1항의 원격지 회의출석비는 별표1 “국내여비지급기준표”에 의한 교통운임(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), 숙박비 및 식비(3분의1) 범위 이내에서 지급한다.

③제2항의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 대상지역은 별표3과 같다.

제5조(여비지급기준)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
②의원의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고,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

제6조(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여비지급) ①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의원의 출장여비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.

②제1항에서 “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”이라함은 충청북도 의회사무실이 있는 청주시내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,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(별표1)

## 국내여비지급기준표

(단위:원)

| 구 분  | 철도운임 | 선박운임 | 항공운임 | 자동차운임 | 현지교통비<br>(1일당) | 숙박비<br>(1야당) | 식 비<br>(1일당) |
|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의 장<br>부의장   | 1등급  | 2등정액 | 정 액  | 정 액   | 10,000         | 41,000       | 25,000       |
| 의 원  | 1등급  | 2등정액 | 정 액  | 정 액   | 10,000         | 41,000       | 25,000       |
| <p>비고</p> <p>1.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여행(동일특별시, 광역시, 시 또는 군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)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2.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, 당해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</p> <p>3.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
(별표2)

## 국외여비지급기준표

(단위:미불화)

| 지급기준<br>구 분   | 항공임  | 일 비<br>(1일당) | 숙박비<br>(1야당) | 식 비<br>(1일당) | 준 비 금 |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
|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5일미만 | 15일이상<br>30일미만 | 30일이상 |
| 의 장<br>부의장  | 1등정액 | 40           | 186          | 133          | 150   | 180            | 210   |
| 의 원   | 1등정액 | 35           | 151          | 107          | 140   | 170            | 195   |
| <p>비고 : 1.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.</p> <p>2.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외여비지급 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

(별표3)

## 원격지회의출석비지급대상지역

(단위:km)

| 시·군별 | 대 상 지 역   |
|------|---|
| 충주시  | 동일원(71.0), 상모면(80.7), 살미면(71.7), 소태면(94.8),<br>임정면(85.8), 산척면(85.8), 동량면(81.8), 금가면(83.8)<br>가금면(81.8), 양성면(77.8), 노은면(69.8), 신니면(63.8) |
| 제천시  | 동일원(118.9), 봉양읍(109.2), 백운면(120.9), 송학면(129.0),<br>청풍면(129.7), 금성면(130.2), 수산면(116.0), 한수면(124.7)<br>덕산면(109.4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은군  | 산외면(64.3), 외속리면(63.2), 내속리면(66.1), 삼승면(66.1),<br>탄부면(67.2), 마로면(70.1)   |
| 옥천군  | 동이면(63.4), 안남면(74.2), 안내면(72.1), 청성면(75.8),<br>청산면(77.5), 이원면(64.6), 군서면(60.6)  |
| 영동군  | 영동읍(83.4), 용산면(87.2), 황간면(100.0), 추풍령면(108.0),<br>매곡면(104.9), 상촌면(110.7), 양강면(87.4), 용화면(113.4),<br>학산면(97.7), 양산면(100.9), 심천면(74.0)    |
| 괴산군  | 장연면(65.6), 연풍면(70.4), 불정면(62.2)   |
| 음성군  | 생극면(60.5), 감곡면(71.6)  |
| 단양군  | 단양읍(143.5), 매포읍(155.6), 단성면(154.7), 대강면(155.4),<br>가곡면(150.7), 영춘면(164.4), 어상천면(164.8), 적성면(168.6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관 련 법 규 발 취

### <지방자치법>

제32조(의원의 의정활동비등) ①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 [개정 99. 8. 31]

1. 의정자료의 수집·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. 다만, 의정자료의 수집·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·도의회의원에 한한다.
2.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3.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

[시행일 2000. 1. 1]

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[전문개정 94. 3. 16]

### <지방자치법시행령>

제15조(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)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, 회기수당(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)의 지급기준은 별표 6,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.

[개정 95. 12. 31, 99. 12. 31]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일에 지급하며,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,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)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·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인 도서지역(연육지역을 제외한다)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,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

[신설 95. 12. 30] [전문개정 95. 7. 1]

[별표 5] <개정 99. 12. 31>

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(제15조관련)

| 구 분         |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    | 보 조 활 동 비     |
| 시·도의회의원     | 월 700,000원 이내 | 월 200,000원 이내 |
| 시·군·자치구의회의원 | 월 550,000원 이내 |               |

[별표 6] <개정 99. 12. 31>

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(제15조관련)

| 구 분         | 회의수당 지급범위    |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범위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시·도의회의원     | 일 80,000원 이내 | 별표 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교통운임(현지 교통비를 제외한다)·숙박비 및 식비(3분의 1) 범위 이내 |
| 시·군·자치구의회의원 | 일 70,000원 이내 |   |



[별표 7] <개정 99. 12. 31>

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(제15조관련)

(단위:원)

| 구 분     |        | 지 급 기준액 |     | 철 도 운 입 | 선 박 운 입 | 항 공 운 입 | 자 동 차 운 입 | 현 지 교통비 (1일당) | 숙박비 (1야당) | 식 비 (1일당)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   |        | 1등급     | 2등급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시·도     | 의장·부의장 | 1등급     | 2등급 | 정액      | 정액      | 정액      | 정액        | 10,000        | 41,000    | 25,000    |
|         | 의원     | 1등급     | 2등급 | 정액      | 정액      | 정액      | 정액        | 10,000        | 41,000    | 25,000    |
| 시·군·자치구 | 의장·부의장 | 1등급     | 2등급 | 정액      | 정액      | 정액      | 정액        | 10,000        | 41,000    | 25,000    |
|         | 의원     | 2등급     | 2등급 | 정액      | 정액      | 정액      | 정액        | 10,000        | 22,000    | 18,000    |

- 비고 : 1.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(동일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)이나 출석 및 여행 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
2.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3.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## [별표 8] &lt;개정 99. 12. 31&gt;

##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(제15조관련)

(단위:미불화)

| 구 분         | 지 급<br>기준액 | 항공임  | 일 비 | 숙박비 | 식 비 | 준 비 금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| 15일<br>미만 | 15일이상<br>30일미만 | 30일이상 |
| 시·도         | 의장·<br>부의장 | 1등정액 | 30  | 169 | 133 | 150       | 180            | 210   |
|             | 의 원        | 1등정액 | 25  | 137 | 107 | 140       | 170            | 195   |
| 시·군·<br>자치구 | 의장·<br>부의장 | 1등정액 | 25  | 137 | 107 | 140       | 170            | 195   |
|             | 의 원        | 2등정액 | 20  | 120 | 81  | 130       | 155            | 180   |

- 비고 : 1.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.
2.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# 공무원여비규정

[별표 4] <개정 98. 2. 28. 개정 2000. 1. 8>

## 국외여비정액표 (제16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미불화)

| 구분  | 등급 | 개정 전 |       | 식비  | 개정(2000. 1. 8) |       |
|---|----|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
|   |    | 일비   | 숙박비   |     | 일비             | 숙박비   |
|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한 특호의<br>가목 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| 가  | 70   | 1,511 | 214 | 80             | 1,662 |
|   | 나  | 70   | 881   | 156 | 80             | 969   |
|   | 다  | 70   | 765   | 117 | 80             | 842   |
|   | 라  | 70   | 526   | 98  | 80             | 579   |
| 동표 특호의 나목 해당자   | 가  | 60   | 853   | 201 | 70             | 938   |
|   | 나  | 60   | 380   | 146 | 70             | 418   |
|   | 다  | 60   | 305   | 110 | 70             | 336   |
|   | 라  | 60   | 254   | 91  | 70             | 279   |
| 동표 특호의 다목 해당자   | 가  | 50   | 320   | 186 | 60             | 352   |
|   | 나  | 50   | 254   | 136 | 60             | 279   |
|   | 다  | 50   | 193   | 102 | 60             | 212   |
|   | 라  | 50   | 135   | 85  | 60             | 149   |
| 처장,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  | 40   | 240   | 160 | 50             | 264   |
|   | 나  | 40   | 182   | 117 | 50             | 200   |
|   | 다  | 40   | 145   | 87  | 50             | 160   |
|   | 라  | 40   | 120   | 73  | 50             | 132   |
| 동표 특호의 라목 해당자(처장, 통상<br>교섭본부장 및 차관 제외)와 동표 제1호<br>해당자 | 가  | 30   | 169   | 133 | 40             | 186   |
|   | 나  | 30   | 123   | 99  | 40             | 135   |
|   | 다  | 30   | 97    | 72  | 40             | 107   |
|   | 라  | 30   | 83    | 61  | 40             | 91    |
| 동표 제2호 해당자  | 가  | 25   | 137   | 107 | 35             | 151   |
|   | 나  | 25   | 99    | 78  | 35             | 109   |
|   | 다  | 25   | 76    | 58  | 35             | 84    |
|   | 라  | 25   | 65    | 49  | 35             | 72    |
| 동표 제3호 해당자와 준위인 군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  | 20   | 120   | 81  | 30             | 132   |
|   | 나  | 20   | 78    | 59  | 30             | 86    |
|   | 다  | 20   | 58    | 44  | 30             | 64    |
|   | 라  | 20   | 51    | 37  | 30             | 56    |
| 동표 제4호(준위 제외) 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  | 16   | 106   | 67  | 26             | 117   |
|   | 나  | 16   | 72    | 49  | 26             | 79    |
|   | 다  | 16   | 53    | 37  | 26             | 58    |
|   | 라  | 16   | 46    | 30  | 26             | 51    |

※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: 2000. 1. 8(대통령령제16691호)

적용 : 2000년 1월 1일부터